

의안
번호

190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인순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190호

다. 제출일자 : 2023. 09. 26.

라. 회부일자 : 2023. 10. 12.

2. 제안이유

-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 마. 비밀 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행정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6. ~ 2023. 10. 01.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가정폭력·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2018년 10개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25개구가 운영 중이며, 별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노원구·구로구·중랑구 3곳임.

〈참고〉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 개소일/ 위치: '20.11.07./ 성북구청 4층
- ▶ 사업대상: 위기상황(가정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가구
- ▶ 사업내용
 - 가정폭력 112신고(동의)가구에 대한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발굴·개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학대예방경찰(APO)과 가정폭력신고(112·117) 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가구 선제적 대응
 - 경찰과 협업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재발 방지
- ▶ 인 력: 5명(학대예방경찰2, 상담원2, 통합사례관리사1)
 - 상시상주 인원: 2명(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 ▶ 소요예산: 인건비 포함 2,700만원(전액 시비보조금)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접수 현황〉

구분	센터의뢰건수			상담 실시가구	서비스제공(건수)						무응답	
	계	성북서	종암서		합계	단순상담	정보제공	위통센터	외부기관 연계	찾동 연계		사례 관리
2023년 8월	338	168	170	295	295	147	141	-	6	-	1	43
2022년	368	116	252	327	327	141	167	2	21	-	2	41
2021년	698	273	425	635	635	580	53	2	47	4	2	63
2020년	76	32	44	73	73	30	36	0	6	1	0	3

□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정폭력·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위기 가정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원활한 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고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성북구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1

서울경찰청 경찰서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비고
중부	124	158	2	65	
종로	45	57	0	23	
남대문	21	25	0	11	
서대문	216	265	2	94	
혜화	47	51	0	17	
용산	191	228	0	64	
성북	164	192	0	68	
동대문	229	269	0	172	
마포	225	259	2	70	
영등포	262	316	4	140	
성동	181	236	0	79	
동작	246	313	2	66	
광진	340	380	3	96	
서부	188	232	6	90	
강북	243	306	3	101	
금천	220	265	1	69	
중랑	357	412	1	125	
강남	154	184	0	78	
관악	376	443	6	70	
강서	552	663	6	112	
강동	367	450	1	182	
종암	159	203	1	52	
구로	356	426	0	128	
서초	179	220	2	67	
양천	433	512	1	107	
송파	542	666	5	117	
노원	618	710	10	319	
방배	69	86	0	19	
은평	190	204	0	22	
도봉	353	428	4	145	
수서	205	262	0	57	